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24. 5. 28.> <u>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(</u>제8조제1항 관련)

1. 종합주류도매업

자본금	5천만원 이상		
(개인의 경우			
자산평가액)			
창고면적	66m² 이상		
그 밖의 사항	가.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. 이 경우 주류뿐만 아니		
	라 비알코올 음료(알코올분 1도 미만이 함유된 음료로서 성인		
	용으로 표시된 음료를 말한다) 또는 무알코올 음료(알코올이		
	함유되지 않은 음료로서 성인용으로 표시된 음료를 말한다)를		
	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하		
	는 것으로 본다.		
	나. 면허 신청인(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		
	의 자격 요건		
	1) 미성년자가 아닐 것. 다만,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7조제1호		
	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		
	예외로 한다.		
	2) 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		
	이 아닐 것		
	3)「조세범 처벌법」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		
	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		
	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		
	4)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5조제2항제1호		
	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		
	부도,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		
	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		

- 비고: 면허 신청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 내에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한다.
 - 1. 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이 창고면적란의 면적기준은 충족하나 벽, 문 등 주류를 보관하는 창고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
 - 2. 그 밖의 사항란 가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

3. 그 밖의 사항란 나목2)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

2. 특정주류도매업

창고면적	22㎡ 이상
판매시설	저장용기 및 방충설비(병입된 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
	다)
그 밖의 사항	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: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나목1), 3) 및
	4)

3. 주정(공업용 합성주정은 제외한다)도매업

가. 주정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

나. 시설기준

_ 나. 시설기준			
구분	시설구분	시설기준	
1) 주류의 품질과 규	가) 가스크로마토그래피	1대	
격을 분석할 수 있	나) 화학천칭	감도 0.1mg 1대	
는 기계 기구	다) 현미경	1,000배 이상 1대	
	라) 항온항습기	0 ~ 65℃ 1대	
	마) 건조기	110℃ 1대	
	바) P.H메타	감도 0.1 1대	
	사) 고압살균기	20파운드 이상 1대	
	아) 증류수채취기	시간당 2ℓ 이상 1대	
	자) 무균상자	1대	
	차) 간이증류기	1회 2점 이상 증류 1대	
	카) 주정계	0.2도 눈금 0 ~ 100도 1조	
	타) 비중계	0.7 ~ 1.85 SG 1대	
2) 저장조	주정의 종류별로 330드럼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		
3) 탱크로리	용량 합계 330드럼 이상		

다. 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: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나목4)

4. 주류수출입업

「대외무역법 시행령」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. 다만, 주류(주정은 제외한다)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, 주정(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)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3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.

 창고면적

5. 주류중개업

- 가. 「대외무역법 시행령」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
- 나.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
 - 1)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. 다만,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(기존에 상품을 공급받던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 일부를 포함하여 상품을 공급하는 판매장으로 한정한다)을 새롭게 설치하여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존 판매장의 상품공급가액(새롭게 설치한 판매장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으려는 기존의 소속 가맹점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으로 한정한다)을 합산할 수 있다.
 - 2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가)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
 - 나)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(법률 제 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농협경 제지주회사에 이관된 판매、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로 한 정한다)
 - 3)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
 - 4)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
 - 5)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

6. 주류소매업

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.

- 가.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
- 나. 「부가가치세법」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

7. 주정소매업

- 가.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
- 나.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취급소 시설을 갖출 것